

● 제290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3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 보고서

2019. 12. 19.

운영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[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노식래 의원 대표발의(찬성자 경만선 의원 외 16명)
- 나. 제안일 : 2019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19. 10. 22.
- 라. 의안번호 : 1092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의안이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거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의안 심사 및 의결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임.

2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, 의안의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(안 제3조제3항)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는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,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거나,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(조직)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의 경우와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의한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“조례” 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, 제3조제3항).
- “조례”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을 통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만,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촉박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음.
- 본 개정안은 이렇게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

략하는 경우에 대해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안 심사와 의결의
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.

<표-1>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·②(생 략) <신 설>	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 <u>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 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③ (생 략)	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
제안 의안이 촉박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본회의
에 제출되는 관행에 대해 그러한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
로써,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
그 목적과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